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230
------	------

2025. 12. 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0월 20일, 김경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8.)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경 의원)

1. 제안이유

-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의 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여 신설(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옥심)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갤러리의 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음.

< 신·구조문대비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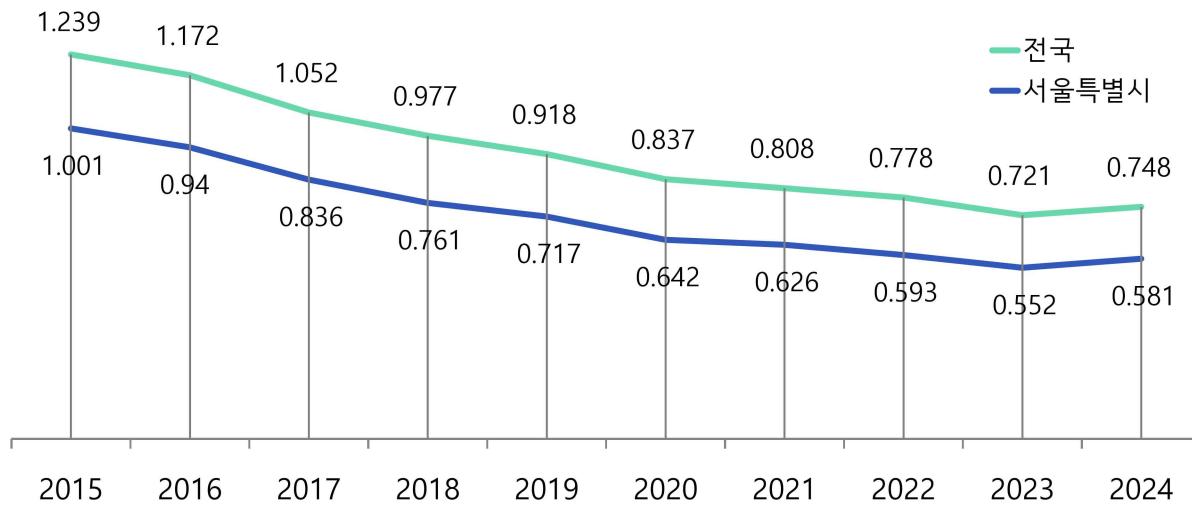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제5조(무료이용)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7. (생 략) <u><신 설></u> 8. ~ 22. (생 략) ② (생 략)	제5조(무료이용)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8.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 9. ~ 23. (현행 제8호부터 제22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2) 개정안의 타당성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0.72)¹⁾이 가장 낮은 국가로, 오늘날 저출산은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시·도 최하위인 0.58(2024년 기준)에 불과하여 문제 해결이 더욱 시급한 상황임.

1) Fertility rates(2023), OECD

< 최근 10년간 전국 및 서울시 합계출산율 추이²⁾ >



- 이와 같은 극단적인 저출산 현상은 노동력 부족, 보건의료 및 사회 보험 제도에 대한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심화시키며³⁾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활 수준 보전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 정책 추진을 위해 가용한 정책 역량과 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결집할 필요가 있는바, 서울 시의회는 2024년 4월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24년 5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은 서울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입장료 등을 감면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2)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통계청

3) Korea's Ugnorn Future(2025), OECD

4)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 및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는 수수료 외에는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조문만으로는 조례의 구체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개별 조례를 개정하여 감면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서울시의회는 현재까지 3건의 조례 개정을 통해 각종 시립 시설의 입장료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 임산부 대상 감면 조례 개정 현황 >

연번	시설유형	개정 조례	공포일자
1	시립미술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무료관람)	2024.9.30.
2	시립박물관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람료의 면제)	2024.9.30.
3	시립체육시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입장료) 제10조(사용료 감면)	2024.9.30.

- 이에 동 개정안은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는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 체계 및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법적 쟁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울갤러리는 원칙적으로 이용이 무료이고, ‘시민청’ 명칭으로 운영되었던 과거 12년간(2013년~2024년) 이용료를 부과한 적이 없어 효과성을 예상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7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230
----------	------

발의년월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김경, 김기덕, 김원태,
김인제, 박승진, 서상열,
성희제, 송재혁, 오금란,
유정희, 임만균, 최재란,
한신 의원(13명)

1. 제안이유

-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의 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여 신설(안 제45조 제1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무료이용)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무료이용) ① ----- ----- ----- ----- -----.
1. ~ 7. (생 략) <u><신 설></u>	1. ~ 7. (현행과 같음) 8.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
8. ~ 22. (생 략)	9. ~ 23. (현행 제8호부터 제22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규정에 의한 세입감소 여지¹⁾가 있어 서울시 관련부서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에 문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현행 같은 조례 제4조제2항²⁾에 의거한 이용료 징수사례 (舊시민청 기준)가 없고, 현재로서는 향후에도 별도의 이용료 징수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할 경우 해당규정이 서울시 세입감소의 실질적인 요소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현

추계분석관 손재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

1) [무료대상 확대에 따른 세입감소 검토 필요성] 현행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서울 갤러리 이용은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2항에 곧이어 자체기획, 대관자 개최 특정전시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기존 특정전시회 등 관련수입 및 감면예정 대상의 유료이용 통계 등을 토대로 세외 수입 감소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 [관련규정 내용] 이용료 징수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이용료) ① 서울갤러리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대관자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